

『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- 중국은 아시아권 진출의 교두보이면서 수출 및 투자유치의 주요 시장국으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을 통해 경제·문화·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교류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-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금액 : 금150,000,000원
- 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3) 관련법령

가) 법 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
나) 조 례 :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주요 사업

1) 경제통상 분야 지원

- 가) 관내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중국시장 진출 지원
- 나) 현지 공관, 코트라무역관, 지·상사 네트워크 구축
- 다) 국제전시회,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현지 마케팅지원
- 라) 구미 투자 가능 타깃 기업 발굴 등 기업투자 유치 활동

2) 국제교류 및 협력분야 지원

- 가)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
- 나) 한·중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

3) 구미시 중국 대표부 역할 수행

- 가) 중국과의 교류 협력 등 창구역할 수행
- 나) 구미시 기업인, 기관단체 등에 현지 방문활동 및 행정지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본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」 은,

- 지역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 창사시에
개설된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출연
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
- 코로나19 등 악화된 여건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미비한 실정이므로
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국통상협력사무소
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